심의건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0	16	1992. 7. 16.	증 재 조 순

의 안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별임과 같이 개정한다

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

제의취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인상을 적용시기를 앞당기고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1457

30/40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~⑥ (생 략)

1458

< 붙 임 >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조 ~ 제12조 (생 략)	제1조 ~ 제12조 (현행과 같음)	
부 칙	부 칙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
2. (경과조치)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.11.30까지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비율을 40%이상으로 운용한다.	2. (경과조치)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. 8.31까지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비율을 40%이상으로 운용한다.	o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상율 적용시기 조정